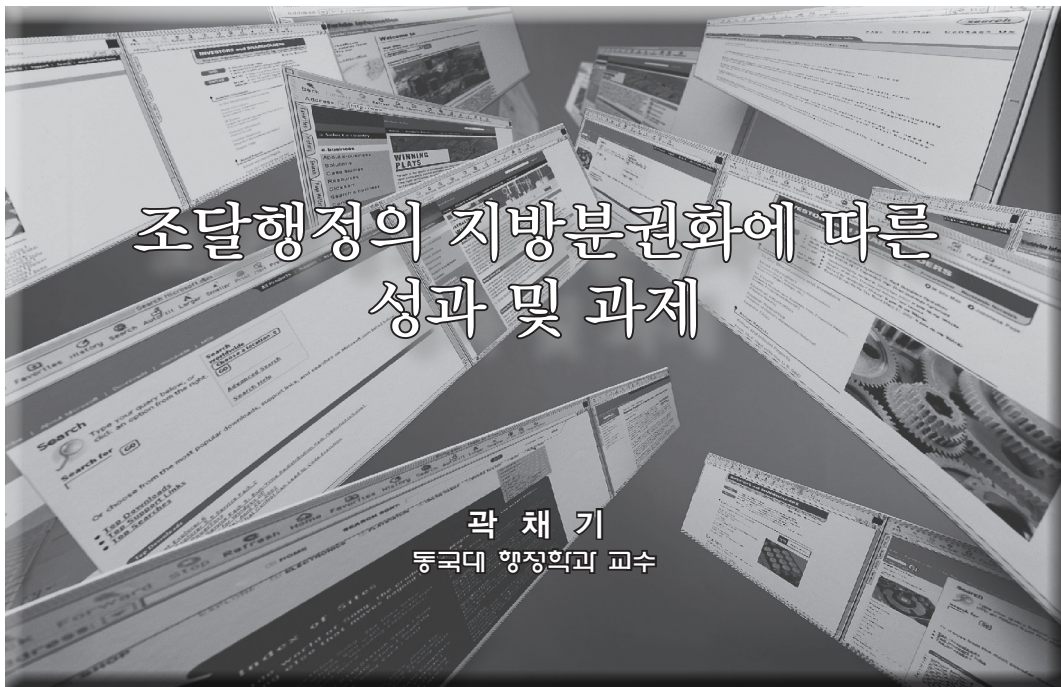




##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과 및 과제

곽 채 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I. 지방분권형 조달행정 시대 개막의 의의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달행정의 역사는 1949년 '임시외자총국'의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61년에 '외자청'을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의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달청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중앙조달기관의 제도화 과정이 1980년대 중반까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정부 조달행정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앙조달행정기관으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조달행정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곽채기, 2007).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조달행정의 분권화이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지방화·분권화의 흐름으로 인해 조달행정 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분산구매 확대 또는 조달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 의무조달 의뢰 범위는 계속 축소되어 왔다.

특히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는 2008년까지 자율화하고, 시설공사는 2010년까지 자율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구매업무가 완전 자율화되었다.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자율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2008년부터 그 동안 조달청이 수행해 왔던 PQ 공사 조달업무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에는 대안·일괄입찰 공사 관련 계약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무조달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 시대가 개막되었다(곽채기, 2009).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조달비용이 증가하거나 부정과 비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전개되어 온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 추진 과정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 II.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의 구축 과정

### 1. 지방조달행정의 분권화·자율화 과정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달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

1) 이 글은 곽채기(2007, 2008, 2009)에 의거하여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체와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조달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그런데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달업무의 재배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적 분산구매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었다(강인재, 1995).<sup>2)</sup>

중앙의무조달제도는 조달청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수요기관이 지는 발주형태로서 분권과 자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계약체결 소요기간 장기화로 발주 지연이 불가피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가격 산정으로 인한 부작용, 조달개방체제에 대비한 조달역량 강화 곤란, 지역업체 수주율 하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물품구매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요자로서의 선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측면과 지역기업들에게 조달과정의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달행정의 분권화·자율화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거래비용 절감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업체 간의 직접적인 거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2002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에 따른 조달행정의 e-비즈니스화는 중앙조달행정기관의 역할과 존립 근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계약정보에 대한 접근경로가 비교적 폐쇄되어 있는 환경하에서는 중앙조달행정기관이 공급업체와 공공기관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의 발달된 전자상거래 기능들을 활용할 경우 중앙조달행정기관에 뒤질 것 없는 정보 수집력과 구매기법을 적용·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빠르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상황에서 굳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중앙조달행정기관을 통한 집중구매를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곽채기, 2003).

이러한 배경하에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한

2) 2000년 당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실적은 30% 수준에 불과하였다.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는 2008년까지 자율화하고, 시설공사는 2010년까지 자율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구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결과 조달행정의 분권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물품·용역 구매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과 용역을 자율적으로 자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모두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의 자체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구매 자율화 과정

|                         |               |              |         |
|-------------------------|---------------|--------------|---------|
| 〈조달청발주〉<br>5천만원(5만불) 이상 | 7천만원(10만불) 이상 | 1억원(20만불) 이상 | 완전 자율화  |
| 〈자체발주〉<br>5천만원(5만불) 미만  | 7천만원(10만불) 미만 | 1억원(20만불) 미만 |         |
| 2004.4.1                |               | 2006.2.27    | 2008년부터 |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발주 자율화 과정

|                                |                                       |                                       |                       |         |
|--------------------------------|---------------------------------------|---------------------------------------|-----------------------|---------|
| 〈조달청 발주〉<br>PQ공사, 대안일괄<br>입찰공사 | 200억원이상<br>PQ공사, 대안일괄<br>입찰공사         | 500억원이상<br>PQ공사, 대안일괄<br>입찰공사         | 대안일괄 입찰<br>공사         | 완전 자율화  |
| 〈자체발주〉<br>기타 공사                | 기타공사<br>200억원미만<br>PQ공사, 대안일괄<br>입찰공사 | 기타공사<br>500억원미만<br>PQ공사, 대안일괄<br>입찰공사 | 기타 공사<br>(모든 PQ공사 추가) |         |
| 2005.1.1                       |                                       | 2007.1.1                              | 2008.1.1              | 2010년부터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달행정을 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하는 계약의 유형 등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지방조달행정의 분권화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조달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최두선, 20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은 바로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 확대에 따른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의 전문성·효율성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제도적 장치를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방계약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주요 제도적 장치의 도입 내용

| 입법 목적                   | 주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 내용                                                                                                                                                                                                               |
|-------------------------|---------------------------------------------------------------------------------------------------------------------------------------------------------------------------------------------------------------------------------|
|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li> <li>■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li> <li>■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 도입</li> <li>■ 조형물 제작·설치 협상계약방법 근거 마련</li> <li>■ 자치단체가 민간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
|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내역 공개 및 절차의 투명화</li> <li>■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화</li> <li>■ 주(主)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li> <li>■ 행안부의 계약분쟁조정기능 확대</li> <li>■ 단체장·지방의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li> <li>■ 전자계약제도 근거 마련</li> </ul> |
| 계약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전문기관 위탁</li> <li>■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 부여</li> <li>■ 전자계약 체결 근거 마련</li> </ul>                                                                                          |
| 지방계약의 자율성 확대 및 중소기업체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에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권 일부 부여</li> <li>■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법제화</li> </ul>                                                                                                                      |

자료 : 최두선(2006: 106)

<표 1>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지방계약 관련 제도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는 주민대표자 등이 공사의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시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줄어들고,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 도입 :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재해복구공사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지방계약법 제3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입찰공고를 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교수, 관련분야 전문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모든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처리 : 지방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계약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사무처리의 고도화를 실현시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게 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난 3년 동안의 지방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새로운 낙찰제도 도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實損) 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의 초과 시공, 시공과정 및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의무화,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도 확대 적용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최두선, 2009).

###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가 기존의 중앙의무조달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중형 조달행정체제에 비해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산조달체제가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현재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조달행정조직과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인 지방조달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용 및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였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써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 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2008).

이러한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2003년에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계단위 편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포항시 등 전국적으로 7개 자치단체가 계단위 편제로 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직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2〉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전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심사 조직 운영 현황

| 구 분   | 업무도입       | 조직                                               | 운영상문제점                           |
|-------|------------|--------------------------------------------------|----------------------------------|
| 마포구청  | '07. 4. 1  | 4명<br>팀장1(행정), 계약직3(토목1, 건축1, 조경1)               | 발주부서와 마찰<br>(현재는 완화)             |
| 성동구청  | '07. 4. 1  | 3명<br>팀장1(행정), 공사(토목1), 용역·물품(행정1)               | 인원 과소, 전문성 부족                    |
| 송파구청  | '08. 2. 15 | 3명<br>팀장1(행정), 공사·용역(토목1, 건축1)                   | 조기발주 등으로 인해<br>업무가 연초에 집중        |
| 동작구청  | '07. 1. 1  | 3명<br>팀장1(행정), 공사·용역(토목1), 물품1(행정)               | 직원 전문성 부족<br>(실무경험 부족)           |
| 울산광역시 | '06. 2. 9  | 5명<br>계장1(행정), 공사·용역(토목1, 전기1, 건1,<br>전산1(물품포함)) | 예산절감 위주로<br>업체반발, 계약심사계<br>소속 문제 |
| 울산북구청 | '06. 11. 6 | 3명<br>계장1(행정), 공사·기술용역(토목1),<br>일반용역·물품(행정)      | 발주부서와의 협의 곤란,<br>성과위주의 절감은 곤란    |
| 포항시청  | '07. 2. 1  | 4명<br>계장1(행정), 공사·용역·물품(토목2, 기계1)                | 전문성확보의 어려움                       |
| 아산시청  | '05. 8. 1  | 4명<br>계장1(행정), 공사(시설1), 용역(행정1), 물품(세무1)         | 재정심사기능은<br>감사과에 설치 필요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2008.4)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는 자치단체별로 전문성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군·구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원가검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와 원가산정을 대부분 민간설계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나, 작성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원가산정 과정에서 연간 6%(1조원)정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달청의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도 있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조직역량과 인적 역량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특히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기능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계약심사와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와 동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2008.8)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심사내용, 심사대상사업, 일상감사 관련 사항 등의 지침내용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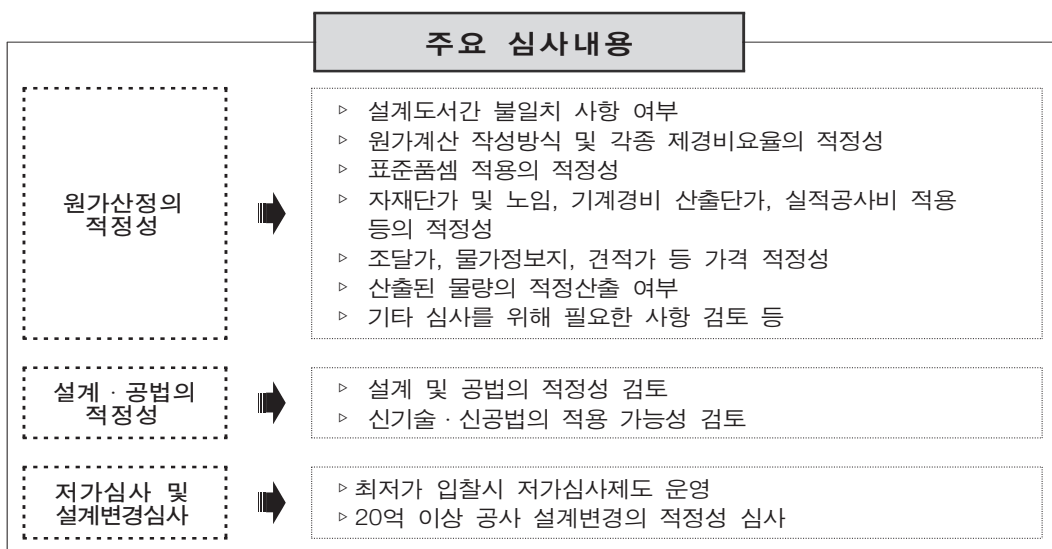
〈표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대상 기관                                                                                                                                                                       | 심사 내용      | 대상 사업                                                                                            |
|-----------------------------------------------------------------------------------------------------------------------------------------------------------------------------|------------|--------------------------------------------------------------------------------------------------|
| 《시·도》<br>□ 시도 본청 및 사업소<br>□ 지방공기업<br>□ 출연기관(단, 50%미만<br>출연기관은 제외)<br><br>《시·군·구》<br>▶ 기본요건 : 시·도비<br>또는 국비보조사업<br>□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br>□ 지방공기업<br>□ 출연기관(단, 50%미만<br>출연기관은 제외) | 원가 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br>(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br>□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br>□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 저가 심사      | □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br>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br>※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br>기관에서 실시 |
|                                                                                                                                                                             | 설계변경<br>심사 |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br>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우선, 의무적 심사대상기관과 사업은 <표 3>과 같다. 의무적 심사대상 기관은 시도의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의무적 심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시·도 계약심사 부서의 인력·조직 상황 및 전문성, 원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시군구 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 심사와 모든 심사 대상기관의 저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여부는 시·도에서 자율 판단·결정하도록 하여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의 한시적 유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의 타당성심사(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도에서 심사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등의 자체심사 실시도 일종의 임의적 심사대상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군구나 지방공기업 등에서도 의무적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이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시·도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계약심사부서의 주요 심사내용



이러한 계약심사제도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별로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심사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도의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시·도별로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분산된 원가심사기능 등을 통합관리하고, 시·군·구와 지방공기업의 계약심사기능도 대행토록 하는 등 각종 공사 등에 있어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기능 전문조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주요 기능을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 운영, 설계변경 내용 및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시·도의 계약심사부서 설치·운영 현황

| 구분 | 설치 부서                    |        | 담당인력<br>(명) | 비고                   |
|----|--------------------------|--------|-------------|----------------------|
|    | 부서명                      | 직제     |             |                      |
| 합계 |                          | 6과 34팀 | 총 221명      |                      |
| 서울 | 재무국 계약심사과                | 1과 6담당 | 39          | 2003년 설치             |
| 부산 | 정책기획관실<br>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신설) | 1과 3담당 | 20          | 계약심사+기술심사            |
| 대구 |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            | 2담당    | 9           |                      |
| 인천 |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            | 1담당    | 5           | 공사, 기술용역은 건설심사과에서 심사 |
| 광주 | 자치행정국 계약심사과(신설)          | 1과 4담당 | 23          | 심사 2명, 청사관리 10명      |
| 대전 |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            | 1담당    | 10          |                      |
| 울산 | 행정지원국 계약심사과(신설)          | 1과 3담당 | 14          |                      |
| 경기 | 감사관실 계약심사과(신설)           | 1과 6담당 | 32          |                      |
| 강원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2담당    | 8           |                      |
| 충북 | 행정국 회계과                  | 1담당    | 4           |                      |
| 충남 | 감사관실                     | 2담당    | 11          |                      |
| 전북 | 기획관리실 예산과                | 1담당    | 6           |                      |
| 전남 |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              | 2담당    | 8           |                      |
| 경북 | 행정지원국 회계계약심사과            | 2담당    | 9           |                      |
| 경남 | 행정안전국 계약심사과(신설)          | 1과 3담당 | 17          |                      |
| 제주 | 자치행정국 총무과                | 1담당    | 6           |                      |

주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2008년 5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중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인력은 2008년 12월 현재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8.12.5)에 의거하여 수정·작성

이상과 같은 시·도별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 방침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 이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별로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중 5개 시도는 과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10개 시도는 팀 단위 전담부서(1-3개 팀)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는 6과 32팀, 221명의 공무원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계약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계약심사업무와 일상감사의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등도 가능한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다.

#### 4.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제도 운영

조달행정의 분권화·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제도이다. 조달청은 2007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수요기관과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업무협력약정(MOU)은 양해각서의 일반적 개념 중 비구속적 성격으로 조달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입찰, 계약 이외의 정보제공, 교육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선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전략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달서비스협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요기관은 조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대고객 자격으로 다양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는 한편 조달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조달업무를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수요기관 핵심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008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110개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할 경우 2,824개 기관)가 조달청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44.7%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들이 조달청과 MOU를 체결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과 및 발전 과제

#### 1.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과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무조달제도의 폐지, 지방계약법의 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는 일반적으로 <표 5>를 통해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장단점을 안고 있다.

<표 5>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의 일반적인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화 · 민주화의 이념에 부합</li> <li>○지자체의 조달역량 강화에 기여</li> <li>○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산업 · 지역기업 보호에 유리</li> <li>○지자체의 수요나 지역사업에 적합한 물품구매 및 계약 체결 가능</li> <li>○조달기간 단축 및 다양성 제고</li> <li>○긴급조달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기관과 조달기관 일치로 인한 부정 · 비리 발생 가능성 증대</li> <li>○지역산업 · 지역기업 보호를 둘러싼 지역할거주의 · 집단이기주의 현상 증대</li> <li>○조달비용 상승 가능</li> <li>○물품규격의 표준화와 품질확보 제약</li> <li>○지자체의 조달행정을 담당하는 인력 · 기구의 증원 초래</li> </ul> |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분권형 조달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통제하는 가운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으로 복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공사의 연간단가계약, 조형물 및 공사계약시 협상계약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 선정

이 가능하게 되었다(최두선, 2009).

한편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각 회계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유명무실했던 원가심사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히 가시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sup>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계약심사부서 기능 활성화를 통해 연간 9,40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12.5).

이처럼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방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지방조달행정의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의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조달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지방조달행정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조달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팔목할만한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지방조달행정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가치’ (value for money)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곽채기, 2008). 우리나라 전체 정부조달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의 조달사업은 2007년 기준으로 46.2%를 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약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5조원으로 지방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 부터 완전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향상에 있어서 조달행정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조달행정의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합리적 선택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곽채기, 2008, 2009).

3)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08.12.5)에 의하면 시도에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하여 2008.8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99건, 2조 4,794억원의 계약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2,13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확보하였다. 심사요청액 대비 절감액 비율(절감율)이 8.6%를 기록하고 있다.

첫째, 중앙의무조달제도가 적용되고 있던 시기에는 지역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적합한 조달 행정체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무조달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을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조달행정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미 2005년에 시행된 지방계약법을 통해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달행정체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조달행정의 자율화·분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계약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조달청), 타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계약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조달청), 타 자치단체, 전문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획일적인 지방조달행정체제 모델에서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적합한 조달행정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계약업무의 외부 위탁(outsourcing) 활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가 기존의 중앙의무조달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중조달행정체제에 비해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산조달체제가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현재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조달행정조직과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인 지방조달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용 및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 등을 통해 지방조달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최저가 낙찰제도 및 원가심사제도의 확대 적용, 공사의 유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도와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의 선택적 적용, 대기업·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절감 방안을 활용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 수행 및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와 기관의 역량 제고 및 지원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목적 중의 하나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발전의 상승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 하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경쟁을 위축시키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진입장벽의 강화는 조 달 물품과 공사의 품질 확보를 제약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장 위축으로 인한 납품 단가 인상 등을 초래 하여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는 지방조달행정의 정책기능인 ‘지역경제 지원기능 강화’라는 수단적 목표와 ‘조달품질 제고 및 경쟁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이라는 본질적 목표 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전 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성능과 효율을 가진 경제성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조달행정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은 장점과 동시에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정부조달분야는 부패와 부 조리 발생 가능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높은 편 이다. 따라서 조달행정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행정부패와 부조리의 통제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는 부패와 부조리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조달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달과 정 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달절차의 표준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반부패라운드, 조달시장의 개방 등에 따라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달권한 행사 보장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부정·비리 문제나 책임성 확보문제는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 편, 자치단체장 등의 조달업무 관련 부패 가능성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계약법을 통해 이미 법제화된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도입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분

권화된 지방조달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계약분쟁 조정기능 확대 등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담당업무를 담당하는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그런데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약업무 수요가 많지 않아 담당인력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계약업무는 순환보직제 적용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업무영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예산과 회계 등을 전담하는 ‘재경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과는 별도로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전문교육과는 별도로 전국단위에서 지방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유해야 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공공부문에 특유한 구매방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업무 수행조직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sup>4)</sup> 특히,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 또는 공공수요기관의 자율구매가 확대되더라도 공공부문 조달행정 수행을 위한 공통기반인 G2B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발전, 정부계약제도의 개발 및 발전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조달기관과 공공부문 내 분산·자율구매기관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sup>5)</sup> 따라서 조달행정의 분권화·분산화·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의 조달행정체제는 과거의 관료적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전통적인 종이

4)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광역자치단체의 조직심사와 설치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효율적이고 신속한 원가적정성 심사를 위한 ‘원가검토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절감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확대로 우수인력 확보 유인책 마련,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전문교육 실시, 우수인력의 확보, 예산절감실적 등 조직 설치·운영실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5)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강한 연방형태의 국가에서도 각 지방정부간 구매정책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조달기관과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구매집행에 있어서 집중구매제도의 이점이 큰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중앙조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반의 조달행정체제 하에서는 중앙조달체제와 분산조달체제가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조달행정체제 설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중앙조달체제와 분산조달체제 중에서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각 행정기관의 자체구매 또는 자율구매의 요구가 증대되면 중앙조달기관의 독점적 조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스템이 종이기반에서 전자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중앙조달기관과 각급 행정기관(자체 조달기능)이 물리적·공간적으로 분절(segment)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G2B를 매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면서 점차 네트워크화·통합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조달제도는 중앙조달 대 분산(자체)조달체제의 양자택일적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 통합적 분권체제 또는 분권적 통합체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분절된 조달행정체제가 상호 융합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각 단위기관들이 G2B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조달행정 수행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공유(pooling)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일 조직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 참 고 문 헌 >

- 곽채기, (2003), “G2B체제하에서의 조달행정”,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곽채기, (2007), “조달행정의 60년 : 중앙조달행정기관의 제도화와 그 이후의 전환 과정”,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 한국행정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곽채기, (2008), “분권화 · 개방화에 따른 지방조달행정의 발전방향”. 한국지방계약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곽채기, (2009), “지방계약과 조달행정의 발전방향”. 2009년 한국지방계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강인재, (1995),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조달행정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 이승철, (1998), “조달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에 따른 조달행정, 한국정책학회 제4차 정책토론회. 한국정책학회.
- 최두선, (20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내용”, 지방재정, 2005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최두선, (2006),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국가계약제도와 달라지는 내용”, 지방재정, 2006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최두선, (2008),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 발전방향”, 한국지방계약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최두선, (2009), “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2009년 한국지방계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행정안전부, (2008.12.5), “보도자료 : 3개월간 계약심사 통해 2,132억원 예산 절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2008),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